

# K-OTC 거래설명서

-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 -

※ [주의]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,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## I. 핵심(요약)설명서

▷ 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)

### □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구분	주요 내용
K-OTC 거래	-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, <b>등록기업부 및 지정기업부의 신규 등록(지정)요건으로는</b>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(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, <b>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신규지정요건으로는</b>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을 것,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(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)일 것 등을 요구하는 시장
코넥스 거래	-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

### □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#### ▶ 발생가능한 불이익

- K-OTC 시장은 주식유동성이 낮아 **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  
또한 소량의 거래로도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### ▶ 투자위험등급 : 1 등급[매우높은위험]

-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, 본 상품은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 해당합니다.  
이 상품은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 훨씬 넘어 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,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
투자자 성향		공격투자형	적극투자형		위험중립형	안정추구형	안정형
상품 투자위험 등급	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위험도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
유동성위험	중도매도(환매불가) [ ]	중도매도(환매)시 비용발생 [ ]	중도매도(환매)가능 [ ○ ]
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## ▶ 유의사항

- K-OTC 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 해당 시장에 등록(지정)되었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,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판단을 하여야 합니다.
- 지정법인<sup>주 1)</sup>은 K-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, 등록법인<sup>주 2)</sup>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됩니다.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주 1)지정법인: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(비신청지정제도)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

주 2)등록법인: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

## □ 민원, 상담연락처

-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(1544-5000), 인터넷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고객의소리(이용안내 > 고객센터/FAQ > 고객의소리)와 본사 민원 담당부서(02-3276-4334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## II. K-OTC거래설명서

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 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 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분류하고 있으며, **본 상품은 1 등급(매우높은위험)에 해당합니다.** 동 상품은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
K-OTC 시장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K-OTC 시장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K-OTC 시장의 성격

- K-OTC 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**등록기업부 및 지정기업부의 신규등록 (지정) 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 억원(클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 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 의견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,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신규지정 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을 것,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(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)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** 다만, K-OTC 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서 동 시장에 등록(지정)되었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판단을 하여야 합니다.

### 나. 지정기업부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특징

- K-OTC 시장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공모실적이 있거나 **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**이며,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**협회가 신규지정 요건을 검토하여**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합니다. 지정기업은 K-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,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, 해제, 매매정지 등의 시장 조치를 취합니다.
- K-OTC 시장 **상장폐지지정법인은 한국거래소 코스피·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신규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협회가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합니다.** 상장폐지지정기업의 거래 기간은 **최초 매매개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로 제한되며, 6 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**

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도에 지정해제 될 수 있습니다. 상장폐지지정기업은 K-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,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, 해제, 매매정지 등의 시장조치를 취합니다.

#### 다. 매매방식

- K-OTC 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(상대매매방식). 호가제출 당시의 상대호가가격에 비해 5 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는 불리한 가격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호가의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. **위탁증거금율은 현금 100%입니다.**
- 등록기업부에 신규 등록되거나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의 신규등록(지정)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%~500%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.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이며, 가격제한폭은  $\pm 30\%$ 입니다.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<sup>주 3)</sup>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 
  
주 3) 기세: 증권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때의 호가로 직전시세에 비해 가장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높은 매수호가
-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업부에 신규 등록되거나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의 신규 등록(지정) 후 최초 매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MIN(상장폐지(지정해제) 전 최종 거래형성일 증가(거래량가중평균주가), 상장폐지(지정해제) 전 최종 3 거래형성일의 증가(거래량가중평균주가) 산술평균)이며, 최초 매매개시일에도 기준가격의  $\pm 30\%$ 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어 해당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.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이며, 가격제한폭은  $\pm 30\%$ 입니다.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### 라. 매매거래시간

-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 시간은 09:00~15:30이며, 동시호가/시간외시장이 없습니다. 08:50 부터 주문접수가 가능합니다.

#### 마. 공시수준

-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,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등록법인은 연 2 회 정기공시를 하며, 금융투자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.
-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-OTC 시장에서 정기·수시·조회공시 등 어떠한 공시도 하지 않습니다.
- 중소·중견기업 해당여부 등 지정기업 및 상장폐지지정기업의 기업정보 및 투자정보는 단지 투자 참고사항으로 제공되는 것으로, 불가피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거나 정보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제공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 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## 바.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

- K-OTC 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또한 거래량 등 **주식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도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**
- K-OTC 시장 매매는 **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**,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**K-OTC 시장 매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**

## 사.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

-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 178 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, 공정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문수락 거부 등 K-OTC 시장 운영규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아.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

- K-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. 이에 따라 **K-OTC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, K-OTC 법인(발행회사), 인수인, 주선인, 소유지분 5% 이상인 투자자(단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자)가 K-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(전자공시시스템)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 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20 조 참고)  
매출신고서 미제출시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자.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

- K-OTC 시장에서 **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(0.20%),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**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(단, 벤처·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)되며, **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**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차. 기업정보 확인방법

- 등록법인의 수시공시, 조회공시는 K-OTC 시장 홈페이지,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지정법인 및 **상장폐지지정법인의** 사업보고서, 분·반기보고서, 주요사항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(<http://www.seibro.or.kr>)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정법인 및 **상장폐지지정법인의** 주요사항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, K-OTC 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, **지정법인, 상장폐지지정법인이**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### Ⅲ.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

√ K-OTC시장 매매는 위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구분	매매 수수료율
영업점계좌 - 오프라인거래	0.491%
영업점계좌 - 온라인거래	0.2998527%
뱅키스계좌	0.1498527%
ARS 주문	0.2471487%

\*투자일임 플랫폼 거래의 경우 영업점 오프라인거래 수수료율과 동일합니다.

√ 관련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([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](http://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>이용안내>업무이용안내>수수료 안내)

### Ⅳ. 기타유의사항

#### ▣ 자료열람요구권 안내

행사요건	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 28 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,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자료열람	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, 범위,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(일부 자료는 5년)동안 보관합니다. 단,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,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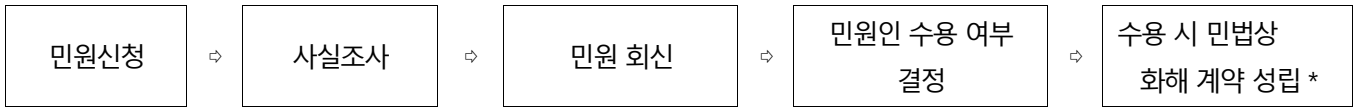
#### ▣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행사요건) 고객님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(대상 금융상품)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</li> <li>○ (해지요구 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) 고객님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</li> <li>○ (해지절차)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(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)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.</li> </ul>
--

#### ▣ 청약철회권

○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아닙니다.
--

#### ▣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



\*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,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접수처	접수방법	비고
전자민원접수	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">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</a> )	고객센터>고객의 소리
영업점민원창구	서면(민원신청서)	-
본사 민원담당부서	이메일( <a href="mailto:minwon@koreainvestment.com">minwon@koreainvestment.com</a> ), 우편, FAX(02-3276-4332)	소비자지원부 (02-3276-4334)

■ 외부기관(금융감독원 등)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



\*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

접수처	연락처	바로가기(인터넷)
금융투자협회	02-2003-9426	( <a href="http://www.kofia.or.kr/wpge/m_77/sub040102.do">http://www.kofia.or.kr/wpge/m_77/sub040102.do</a> )
한국거래소	02-1577-2172	( <a href="http://simskrx.co.kr/p/Drct0201/">http://simskrx.co.kr/p/Drct0201/</a> )
금융감독원	1332	e-금융민원센터 링크( <a href="http://www.fcsc.kr">www.fcsc.kr</a> )(PC)

<b>판매직원</b>	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
<b>확인사항</b>	한국투자증권 _____ 지점 (☎ _____) 직위: _____ 직원명 : _____ (서명)